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2026-제7호 입법정책 동향

2026.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7월 일

발 행: 2026년 7월 일

목 차

I. 타 시도 입법 동향

- ◇ [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6
- ◇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0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18
- ②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21
- ③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5

III. 입법 · 정책 현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32

IV. 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 ①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36

V.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 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회법인의 체험교육 목적으로 농지 취득 가능 여부 ... 42
- ②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개장시, 시신(유골)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장사 예우 절차 이행 여부 45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① 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될까? 50

I . 타 시도 입법 동향

I. 타 시도 입법 동향

◇ [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6. 30.] [충청남도조례 제6136호, 2026. 6. 30.]

□ 관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장거리 통학, 과밀학급 운영 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천안, 아산 등 대도시의 경우 각종 지원과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특수교육 인프라 및 접근성이 부족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및 통학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제3조)
- 특수학교 설립계획의 수립 (제5조)
- 특수학교의 설립 규정 (제6조)
- 특수학교 설립계획의 수립 (제5조)

□ 입법 시사점

- ▲ 충남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하고 있으나,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2022~2025년 특수교육 학생수 현황(출처: 교육부 특수교육원 누리집)

연도	충 남		전 북		전 국	
	특수교육 학생수	전년 대비 증감	특수교육 학생수	전년 대비 증감	특수교육 학생수	전년 대비 증감
2022	5,228	-	4,070	-	103,695	-
2023	5,583	355 (6.79% 증)	4,273	203 (4.98% 증)	109,703	6,008 (5.79% 증)
2024	5,875	292 (5.23% 증)	4,548	275 (6.43% 증)	115,610	5,907 (5.38% 증)
2025	6,292	417 (7.10% 증)	4,801	253 (5.56% 증)	120,735	5,125 (4.24% 증)

- ▲ 특히 현재 충남의 특수학교 11곳 모두 지적장애 유형의 학교로서, 그 외의 유형(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설과 순회교육 지원 체계를 정립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촉진’을 위한 조례는 없으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연관 조례*는 시행중임

✓ (연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의 경우도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프라 확대 및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및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중 특수학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학교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수학교 설립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수요 분석
2. 지역별 특수학교 배치 계획
3. 특수학교 신설·이전·확충 계획
4.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여건 개선 방안
5.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수학교의 설립)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군별로 특수학교가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과밀 또는 원거리 통학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지 확보 및 시설 확충) ①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교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설치·확충하여야 한다.

제8조(통학 및 교육여건 보장)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전이라도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지원, 순회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3년마다 특수교육 수요 및 교육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6136호,202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6. 25.] [대구광역시조례 제6498호, 2026. 6. 25.]

□ **관련 상임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그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출산·양육·가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출산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 의무를 강제적 성격에서 자발적 노력을 권고하는 문언으로 정비함(제5조)
- 출산 관련 정책 수립 시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 입법 시사점

- ▲ 2005년 이후로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들을 수립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왔지만,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전 분석·검토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음

✓ 대구광역시 출산 관련 주요사업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등

- ▲ 이에 해당 조례는 각종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출산환경(주거·고용·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출산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음

▣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시행 중

✓ 대구광역시 조례와의 차이점

구 분	대 구	전 북	비 고
대상범위	출산과 아동 양육 당사자	출산과 아동 양육 당사자 및 고령화 인구 등	
정책체계	사전평가(출산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사업)수립 및 사후평가	정책(사업)수립 및 사후평가	
제도목적	선제적 예방 조치 포함	환류 및 추후 조정 역할	

- * (사전평가 도입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최초) 출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은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행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의2(출산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5.]**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 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조아카드) ①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교부하고, 대상자가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우대 및 할인 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

제14조(출산장려의 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주간으로 한다.

제15조(결혼장려 지원) ①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25.>

1.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2.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 및 홍보
3.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4.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제16조(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 시장은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혼장려 또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지원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부 칙 <조례 제6498호, 202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1

[법률 제21636호, 2026. 5. 12., 시행 2026. 11. 13.]

□ 개정이유

- 최근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취미·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이 제한(금지)된 구역에서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됨
 - 현행 제재 수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형벌) 근거를 마련함
- ✓ (현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내용

- ① (처벌 대상 강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 ② (경과조치) 종래 과태료 처분을 형벌로 전환 할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 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 -----.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 ----- 제161조제2항제1호의2 • 제2호 및 제4항 제2호가-----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부칙 신설>	부 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 시사점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처벌 강화(제161조제2항제1호의2)」

- (안보 리스크 기조 변화) 기존의 드론 무단 비행이 ‘단순 위반’ 수준의 적발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원전, 군사시설,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로 규정함
-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불법 비행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정책 변화) 국내 드론 정책이 단순한 항공 규제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저고도 항공에 대해 심층적인 관리 단계로 변화된 것을 보여줌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 조례」 시행中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시행 2026. 6. 16.]

□ 개정이유

-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연구·개발 등의 지원근거 마련
- 자동차매매업 전시기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정의)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지원 대상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포함되도록 함
(제2조제4호의7 신설)
- ②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 ③ (부칙 개정)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 개정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의6. (생 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신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 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의 기준·절차----- -----.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 시사점

▲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최근 고령 운전자 급증에 따른 페달 오조작 사고의 사회적 안전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상생의 균형을 도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안전 장치의 법제화) 기술 발전에 맞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도입될 신차 의무화 정책(2029년 예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

※ (가속페달 오조작) ①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80%이상 밟을 경우,
②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

- (사전 예방으로 전환)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후 책임 공방에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 및 튜닝 비용 보조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함

- (소상공인 보호) 폐업 후 재등록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종전 기준 적용을 개정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의 시장 재진입 문턱을 낮춤

✓ (전북도 연관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3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시행 2026. 12. 17]

□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에 대해 그간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① (제정 목적)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
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② (계획 수립 및 비용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 ③ (연구 개발 및 육성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신설>	7.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신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북극항로 사업자,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육성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신설>	제12조(연구개발)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북극항로 운항 및 물류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5.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 시사점

▲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북극항로 이용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물류체계 전환, 경제안보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법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고부가 가치 극지 산업 생태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증하고 키우겠다는 선언과 같음

- (정책적 측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신설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중장기 법정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됨

✓ 범정부 컨트롤타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북극항로추진본부’

- (산업경제적 측면) 국가와 지자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양거점 도시들이 산업기지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과의 연계 타당성도 높임
- (외교안보적 측면) 수에즈 운하 대비 거리와 시간이 30%이상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 개척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Ⅲ. 입법 · 정책 현안

IV. 입법 · 정책 현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6. 6. 24.] / 하혜영

- ▲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 간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함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 5위의 인구규모와 전국 3위의 지역내총생산(GRDP)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함
✓ [인구규모] 316만명, [지역내총생산] 158조 8,075억원
- ▲ 허나,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자치정부로서 정착하기 위한 과제 수행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권한과 특례

○ (주요 권한과 자치권 강화)

- 관할구역에 자치구와 시·군을 동시에 두는 광역지방정부 모델 채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 4명의 부시장과 1급 의회사무처장, 복수의 의회사무차장 등을 둘 수 있으며, 4년간 기준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및 정원 운영 가능

○ (재정 및 균형발전 특례)

- 균형발전기금 설치 의무화로 특별시 내 지역간 격차 해소 여건 마련
- 정부의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지방의회 기능 강화)

- 의원정수 확대(84명⇒91명) 및 특별시의회의 소관 기구 설치 및 예산 편성의 독립성 강화(사무직원 임용 권한 및 예비금 신설 등)
-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근거 마련 (의원정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확대 노력)

○ (산업 및 생활 특례)

- 시장의 광역단위 AI클러스터 지정 권한 및 반도체·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우선권 부여
- 지방의료원 설치·운영,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

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제도 및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행정구역	(기초지자체) 5시·5자치구·17군 유지 및 권역별 주청사(광주, 무안, 순천 등) 균형 운영 (지위 격상) 통합특별시장 장관급 위상(서울특별시급) 부여, 국무회의 참석 권한 확보
권한이양	(지방 분권)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포괄적 이양) 행정 및 특정 개발계획 등 인허가권 통합특별시로 이관, 예타 면제 및 국비 확보 우대
조직인사	(조직) 차관급 부시장 4인, 주요 직책의 직급 상향, 기준인건비 1% 초과 운영 특례(4년간 자율적 운용) 등 (인사)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교육공무원 포함), 인사상 불이익 방지·경력 인정·구조조정 완화,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등
지방재정	(재정 확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채 발행 특례,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공유재산 관리 특례, 세율 조정 특례 (재정 특례) 내국세 연계한 통합특별교부금 확보 근거 마련
교육자치	(조직) 부교육감 2인, 교육청 자치조직권 확대(1실·6국으로 확대 운영) 등 (권한) 교육과정·학교운영 자율성 강화, 영재학교 설립 및 사립대학 설립 인가 권한
지방의회	(의원) 정원 증원,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회) 사무기구 특례, 의회 예산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 등 보고, 부시장 및 주요 개방형 고위직(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산업 및 지역발전	(미래첨단산업) 광역단위 AI클러스터 직접 지정 권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 (에너지) 20MW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특례 (투자유치) ‘투자진흥지구’ 직접 지정 권한, 입주 기업 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 상향
주민 생활특례	(보건·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 설치·운영 특례(예타 면제 등) (인구정책)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청년정책)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

2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 (실질적 권한 이양)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보다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참고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재정자립 기반 구축)

-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음
- 정부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자체 재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협치 거버넌스 구축)

- 통합특별시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를 넘어 핵심 거버넌스 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예산 통제, 집행부 견제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초광역 단위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는 진일보된 의회 역할이 필요
-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역내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 통합의 효과가 일부 거점지역에 집중될 경우,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소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설계가 필요
-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발전정책을 병행하며, 균형발전기금 및 공공기관 분산배치 등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발전체계 구축해야 함

IV. 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IV. 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①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1호, 2026. 6. 23. 안성경 조사관]

□ 주요내용 [요약]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을 근거로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쟁물자 규제와 관련하여 관련법과 고시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신고 대상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교전국에 대한 전쟁물자 수출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규정은 없음

✓ (관련법률)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과 관련 시행령

□ 전쟁물자 수출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논란) 세계 곳곳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에 대여한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특정 국가로의 무기수출이나 지원이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0412057200504>)

- **(입법례 참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전쟁물자 규제는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이들 규제는 전쟁물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수입, 수출, 중개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무 등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규정을 명문화 함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국회 법률 발의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28일 김병주 의원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독일의 전쟁물자 규제(전쟁 무기 통제 법)

- **(개요)** 1961년 4월 2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전쟁무기의 생산, 취득, 양도 및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전쟁무기를 개발,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유통하기 위해서는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의 사전허가가 필수적이며, 사전허가 없이 전쟁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가받은 기업은 정기적 재고와 유통현황 보고, 당국은 현장 점검 실시
 - 구체적 집행을 위한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보완적으로 규율

표	독일의 전쟁무기 관련 시행령
1. 전쟁무기 일반허가 시행령 (KrWaffGenV)	특정 유형의 전쟁무기를 독일 연방 영토 내에서 운송하거나 EU 내에서 이동할 때 개별 허가를 받는 대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주는 시행령이다.
2. 전쟁무기 보고에 관한 시행령 (KWMV)	통제 대상 전쟁무기의 재고, 이동 등과 관련된 상세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이다.
3. 전쟁무기 무력화 및 취급 시행령 (KrWaffUnbrUmgV)	전쟁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화(‘비군사화’) 절차 및 무력화된 무기의 취급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 오스트리아의 전쟁물자 규제(전쟁물자법)

- (개요) 1977년 10월 18일에 제정된 이 법은, 전쟁물자의 수입, 수출, 통과, 중개 등에는 관계장관들의 허가가 필요
- (주요 내용) 연방정부는 국가평의회 본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쟁물자로 지정될 무기, 탄약, 장비 품목을 정하며, 전쟁물자시행령에 전쟁물자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음
 - 허가없이 전쟁물자를 수출·입, 중개 등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영리를 취하거나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함

□ 스위스의 전쟁물자 규제(전쟁물자법, 전쟁물자법시행령)

- (개요) 2023년 7월 1일에 제정된 이 법은, 전쟁물자 및 관련 기술의 생산과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외교정책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
- (주요 내용) 국제적·내전적 무력 충돌에 연루된 국가에는 자국산 무기와 군수품을 판매할 수 없고, 구매한 제3국이 분쟁지역으로 무기를 재수출할 경우 스위스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전쟁물자법시행령(KMV)으로 상세 규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리히텐슈타인 또한 이 시행령을 국내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표

다흐(DACH)의 전쟁물자 규제 관련 주요내용 비교

✓ 다흐(DACH) : 독일(D), 오스트리아(A), 스위스(CH)로서 독일어를 주요언어로 사용하는 인접국가를 말함

항목/ 국가명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중립성	-	영세중립국 (헌법 제9a조)	중립국(헌법 제173조제1항)	
법령 제목(약어)	전쟁무기통제법 (KrWaffKontrG)	전쟁물자법(KMG)	전쟁물자법(KMG)	전쟁물자법 시행령(KMV)
제정 연도	1961	1977	1996	1998
최근 개정일	2025. 2. 19.	2019. 10. 29.	2023. 9. 1.	2025. 2. 25.
제정 목적	헌법상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통제 시행(제1조)	전쟁물자의 수입·수출·통과 및 중개 규율(제1조제1항)	전쟁물자와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의무 이행, 국가 방위산업 역량 강화(제1조)	전쟁물자의 거래, 중개, 수출입 및 운송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부여 규율(제1조)
개념 정의	전쟁무기란 부속서에 명시된 대상(제1조)	전쟁물자의 수입·수출·통과란, 전쟁물자를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는 것 (제1조제2항)	전쟁물자는 무기, 무기체계, 탄약 및 군용폭발물(제5조)	전쟁물자를 부록1에 따라 분류
규제 대상	전쟁무기의 제조와 매매(제2조), 연방 내외로 이동 (제3조 및 제4조)	수입·수출·통과되는 전쟁물자(제1조)	전쟁물자의 생산, 거래, 조달, 수출입 및 운송(제2조)	부록1에 따른 전쟁물자목록(제3조)
재수출 제한(중개)	-	EU회원국에서 제3국으로의 재수출 제한(제3조제4항)	재수출금지(제18조)	재수출금지신고(제5조)
국제 기준 적용	NATO 규정	UN안보리 결의, EU조약 등(제3조제1a항)	-	바세나르 협정(WA)에 따른 부록1 전쟁물자목록
형벌 규정 (행정조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유로 이하 벌금(제19조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제7조), 또는 최대 4만 유로의 벌금(제8조)	고의 중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은 벌금(제33조)	제21조(허가의 취소 등)

V.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V.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법인의 농지 취득 가능 여부

[법제처 26-0411,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2026. 6. 23.]

□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4호에서는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열거한 실습지 등은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실습지”에는 전문적 농업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단체 등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농업적 환경을 체험하고 익히기 위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에 사용되는 농지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식물 성장 관찰, 작물 재배 체험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농지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체험수업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제3호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유치원, 고아원 등 영유아를 돌보는 기관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1995년 12월 29일 농림수산부령 제2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도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체험수업 운영을 위하여 실습지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공공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농지취득인정신청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제5항),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실습지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우려가 적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개장시, 시신(유골)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장사 예우 절차 이행 여부

[법제처, 26-0248,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6. 16.]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무연고시신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장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하여 장례의식, 매장·화장, 봉안의 순서로 장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무연고시신등을 처리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무연고시신등’이란 아직 장례의식, 매장·화장 등 장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신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확인 의무도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서 아직 장례의식, 매장·화장 등 장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연고시신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 또는 유골의 경우, 해당 시신 또는 유골은 장례의식 등의 장사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분묘에 매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무연고시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시신 등의 처리 주체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시신등의 처리 의무를 ‘시장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등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토지나 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등이 직접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신 등의 처리 주체를 사인(私人)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장등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확인 및 장사 예우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장사법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장사법 제12조제3항은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후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장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발견된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처리에 앞서 국가유공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장사법에서는 이미 장사 절차가 완료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확인 의무를 시장등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의평결일자: 2026. 6. 16.]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나요?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7일 이혼 조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B씨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6월 B씨가 2억 3,7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매수자금 상당 부분이 부부의 공동저축과 A씨의 적금에서 마련된 만큼 사실상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던 2021년 11월에는 시세가 3억 6,750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고, 2025년 11월 아파트 시세는 2억 3,0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가액은 “이혼 조정 당시의 시세(3억 6,750만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B씨는 아파트 시세 하락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실제 가치(2억 3,000만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가액(아파트의 가치)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39조의2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민법)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① (A씨)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혼 조정이 성립한 그날입니다. 그때 아파트는 3억 6천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므로 아파트는 3억 6,750만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② (B씨)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 전체의 문제이고, 시세 하락은 외부적인 요인이므로, 심문종결 당시 실제 가치인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결과

✓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인 2021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2억 3,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유

위 사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판결).

대법원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고 하면서 “재산분할사건은 마류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 11856, 11863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따라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인 2021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2억 3,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